제1호 양식

고교생등장학급부금 수급 신청서

令和8年8月25日

신청일을 기입하십시오.

○○高等学校学校長　　귀하

다음과 같이 고교생 등 장학급부금 수급을 신청합니다.

굵은 글씨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1】신청자에 대하여

보호자 1	후리가나	カナガワ　タロウ	학생과의 관계	☑친권자(아버지) □친권자(어머니)□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인 위탁부모 □주된 생계유지자 □학생 본인 □기타(　　)
	이름	神奈川　太郎		
	주소	〒XXX-XXXX 神奈川県横浜市○○区▲▲1-2-3-405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90-1234-5678
보호자 2	후리가나	カナガワ　ハナコ	학생과의 관계	□친권자(아버지) ☑친권자(어머니)□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인 위탁부모 □주된 생계유지자 □학생 본인 □기타(　　)
	이름	神奈川　花子		

신청자의 이름, 주소,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고교생 등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하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신청자 이외의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2에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2】신청 구분

일반급부	□	①생활보호 수급 세대(생업부조의 고등학교등취학비를 7월 1일 시점에 받고 있음)
	☑	②주민세 비과세 세대
	□	③2026년도 현민세・시민세 소득할액 합계 100엔~105,499엔 세대
	□	④2026년도 현민세・시민세 소득할액 합계 105,500엔~182,499엔 세대
가계급변	□	가계 급변으로 보호자의 수입이 줄어든 세대

생활보호 수급 세대인데도 ② 세대 구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장학급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신청 구분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3】고교생 등의 상황

후리가나	カナガワ　ジロウ		생년월일	□헤이세이 ☑서기	2009年8月1日
이름	神奈川　次郎				
재학 중인 학교	학교명	神奈川県立○○高等学校	과정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학년 2年
	재학 기간	시작　2025년 4월 1일　~종료　2028년 3월 31일			

이전 고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	학교명	재학 기간	과정	재학 중에 급부금을 받은 횟수
		~		□없음 □1회 □2회 □3회 □4회 □모름
	학교명	재학 기간	과정	재학 중에 급부금을 받은 횟수
		~		□없음 □1회 □2회 □3회 □4회 □모름

신청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7월 1일 시점에** 재적 중인 학교명, 과정, 학년, 재학 기간을 기입하십시오.

이전에 다닌 고등학교 등이 있으면 기입하십시오.

【4】국적・재류자격

☑	① 일본 국적
□	② 특별영주자
□	③ 영주자
□	④ 일본인의 배우자 등
□	⑤ 영주자의 배우자 등
□	⑥ 정주자 중 앞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음
□	⑦ 가족체재 자격자 중 일본의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일하며 정착할 의사가 있음
□	⑧ 상기 이외(2026년도 신입생으로 재류자격 "유학"은 제외)

해당하는 국적・재류자격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④~⑧만 기입) 재류기간 만료일	년　월　일

⑥, ⑦에서 의사가 없는 경우는 ⑧에 해당합니다.
⑧에 해당하고 2026년도 신입생이며 재류자격이 "유학"인 경우는 이 급부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5】입금 계좌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ゆうちょ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농협	금융기관 코드	9	9	0	0	지점명 등	○○○	본점・지점・본소・지소・출장소	지점 코드	1 2 3
	예금종류	보통・당좌・저축		계좌번호	1	2	3	4	5	6	7	예금주(신청자)	カナガワ　タロウ

신청자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입하십시오.

【현 사용란】

保護者１所得割額	保護者２所得割額	所得割合算額（★）
支給決定額	学校充当額	申請者入金額

全日・定時		通信	
★=0円⇒143,700円		★=0円⇒50,500円	生活保護
0＜★＜105,500円⇒47,900円		0＜★＜105,500円⇒16,830円	32,300円
105,500円≦★＜182,500円⇒35,930円		105,500円≦★＜182,500円⇒12,630円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반 급부　기입 예

【6】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생업부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과세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소득 상황	제출 서류	비고
□ 생활보호 세대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복지사무소가 7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 세대 이외	다음 사람의 (비)과세증명서 등	
	☑ ①친권자(부모) 2명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가 2명인 경우 ※단신 부임인 경우에도 2명분 필요
	□ ②친권자 1명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친권자는 2명이지만 가정폭력(DV), 양육 포기, 실종 등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쪽 친권자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 ③미성년후견인	친권자가 없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여러 명이 선임된 경우는 전원분
	□ ④주된 생계유지자 2명	학생이 재학 중 성인이 된 경우로,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경우
	□ ⑤주된 생계유지자 1명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있는 경우 학생이 성인이고,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학생이 성인이고,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었던 경우 등
	□ ⑥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주된 생계유지자가 모두 없고, 학생이 성인인 경우 등

해당하는 소득 상황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해당하는 보호자 상황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다음 이유로 상기 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주된 생계유지자가 모두 없는 경우)이지만, 미성년으로 도부현민세 소득할・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만큼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국적・재류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국적/재류자격	제출 서류	비고
☑ 일본 국적	주민표 사본(원본)	
□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 중 하나 ・주민표 사본(원본)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복사한 것 ・주민표 사본은 국적・재류자격 등이 기재된 것
□ 영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정주자 □ 유학(신입생 제외)	・재류카드 사본 중 하나 ・주민표 사본(원본)	・재류카드는 복사한 것 ・주민표 사본은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 ※영주자는 주민표 사본에 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주자는 앞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 가족체재	・재류카드 사본 중 하나 ・주민표 사본(원본) **그리고** 다음 중 하나 일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중 하나 ・졸업증명서 원본	・재류카드는 복사한 것 ・주민표 사본은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특별지원학교(초・중), 의무교육학교의 전・후기 과정,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도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일하며 체류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국적・재류자격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에 체크하십시오.

□	고교생등취학지원금 등의 신청에서 제출한 과세증명서와 재류카드 사본 등을 사용하여 고교생등장학급부금의 지급 심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7】서약・위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위임)합니다. **신청자 이름 神奈川 太郎**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 고교생 등 장학급부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청의 대상 고교생 등은 7월 1일 시점※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 조치비 등(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모자생활 지원시설 고교생 등은 제외))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계 급변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

・(비과세 세대만) 7월 1일 시점에 생활보호(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주된 생계유지자인 경우만) 저와 학생 본인은, 건강보험법 등에서의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에 내는 납부금 등에 미납이 있을 때는 제가 받는 고교생등장학급부금을 그 미납에 충당하는 것을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주) 가나가와현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위의 밑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사용합니다.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장학급부금을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가 서명하십시오.
서명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학교 사용란】

학교수령인

次のことについて確認しました。

・（□（通常給付の場合）令和８年７月１日現在、 □（家計給付の場合）令和　年　月　日現在、）本校の（□全日制 □定時制 □通信制）課程に在学します。

・（□就学支援金 □学び直し支援金）の受給資格を有する（補助要件を満たす）者です。

・ 納付金等について、（ □未済なし / □未済あり（　　円）

学校の名称

学校長の氏名

職印

学校の電話番号

기입하지 마십시오.